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것
2.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3. 필요시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제3-6조제22호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26조제1항제2호 중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3-27조제1항제2호 중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3-2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 중 “금융투자업자”를 각각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3-36조제1호나목 중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

은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3-4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3-6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집합투자업자(직전 분기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제5호의 위험관리정책 및 제6호의 내부통제정책 이행내역 제4-40조제1항제6호다목 중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4-5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라목의 총수익스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24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에 포함한다.

제4-5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매매거래 정지 상태인 증권을 포함한다]을 자전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래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료부터 그 자산의 공정가액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다만, 해당 자전거래에 관하여 그 자산을 매도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매수하는 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

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월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개월 평균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최초 모집기간 중 모집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20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자전거래에 관하여 그 자산을 매도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매수하는 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제3항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을 “가액으로 하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자전거래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제4-6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20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위반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제7-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제4-54조제1항제3호 라목, 같은 호 바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

제7-41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영 제271조의10제6항”을 “영 제271조의10제7항”으로 한다.

- ③ 영 제271조의10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 투자대상 자산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4.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
5.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6.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현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8-19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련협회등은 소속 신용평가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신용평가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8-19조의10제6항제2호 중 “요청인의 대표이사”를 “요청인의 대표이사(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의 경우 자산보유자의 대표이사, 주관회사 등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작성주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8-19조의11제2항제1호 중 “10일”을 “1개월”로 한다.

제8-19조의11제2항제2호 중 “20일”을 “1개월”로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의 개정부분은 고시한 날로부터 6월 후 시행한다.

제3조 (집합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기재사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6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4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보고 서류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자를 말한다.</p> <p><u>&lt;신 설&gt;</u></p>	<p>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p> <p>①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자를 말한다.</p> <p>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것</li> <li>2.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li> <li>3. 필요시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li> </ol>
<p>제3-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1. (생략)</li> <li>22. "2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u>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u></li> </ol>	<p>제3-6조(용어의 정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1. (현행과 같음)</li> <li>22. ----- ----- <u>집합</u> <u>투자업자</u>----- ----- -----</li> </ol>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를 말한다.

23. (생략)

제3-2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2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3. (생략)

② ~ ⑨ (생략)

제3-2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생략)

2. 2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3. (생략)

② (생략)

제3-2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원

-----  
-----.

23. (현행과 같음)

제3-26조(경영개선권고)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27조(경영개선요구)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8조(경영개선명령) ① -----

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2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 3. (생략)
- ② (생략)
- ③ 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생략)
-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3제3호가목

다. (생략)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생략)
-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3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  
-----  
-----

1. -----  
-----  
-----  
-----

- 가. (현행과 같음)
- 나. ---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다. (현행과 같음)

- 2. -----
- 가. (현행과 같음)
- 나. ---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



제3-6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신설>

7. ~ 9. (생략)

② ~ ⑨ (생략)

제4-40조(별도예치금의 운용) ①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을 말한다.

1. ~ 5. (생략)

6.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기준미달  
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적기  
시정조치가 유예중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예치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출(법 제83조제4항

이 되는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3-6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집합투자업자(직전 분기말 현  
재 운용자산규모가 2,000억원 이상  
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제5호의  
위험관리정책 및 제6호의 내부통제  
정책 이행내역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40조(별도예치금의 운용)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  
-----  
-----  
-----  
-----



자기구 상호 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수량으로 같은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 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매매거래 정지 상태인 증권을 포함한다]을 자전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래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자료부터 그 자산의 공정가액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다만, 해당 자전거래에 관하여 그 자산을 매도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매수하는 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월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개월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략)

<신설>

제7-8조(집합투자규약의 기재사항) 영 제215조제12호, 제227조제1항제13호, 제234조제1항제12호, 제236조제1항제12호, 제236조의2제1항제12호, 제237조제1항제11호 및 제239조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제7-4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 ①·② (생략)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20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위반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제7-8조(집합투자규약의 기재사항)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제4-54조제1항제3호 라목, 같은 호 바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

제7-4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략)

<신 설>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영 제 271조의10제6항에 따른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1조의10제9항에 따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19조의7(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① (생략)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과 같음)

③ 영 제271조의10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 투자대상 자산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4.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
5.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6.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현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④ -----  
-----제7항-----  
-----  
-----.

⑤ -----  
-----  
-----.

제8-19조의7(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련협회등은 소속 신용평가회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 ⑤ (생략)

⑥ 영 제324조의8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2. 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 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제8-1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략)

제8-19조의11(신용평가서 등의 제출·공시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5조의11제4항에 따른 신

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신용평가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현행과 같음)
2. ----- 요청인의 대표이사(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의 경우 자산보유자의 대표이사, 주관회사 등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작성주체를 말한다)-----  
-----  
-----  
-----  
-----.
3. ~ 5. (현행과 같음)

제8-19조의11(신용평가서 등의 제출·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용평가실적서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일 이내 제출할 것

2. 제8-19조의9제3항 각 호의 서류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0일 이내 제출할 것

3. ~ 5. (생략)

-----  
----- 1개월 이내 -----  
--

2. -----  
----- 1개월  
이내 -----

3. ~ 5. (현행과 같음)